

제재내용 공시

1. 조합명 : 군산시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5. 2. 28.

3. 제재조치(요구)내용

| 제재대상 | 제재내용 |
|------|-----------------|
| 직원 | 견책(3명) 및 경고(3명) |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 사실

□ 주택건설자금대출 사후관리 업무 부적정

가. 감정평가 및 채권보전 업무 부적정

-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후 건물 준공에 따른 후취담보 취득 시 감정규정에 의한 외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담보가액을 산출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즉시 추가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외부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외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출잔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하였고 현재 원금 연체중으로 담보물 임의경매 진행중에 있음

나. 대출금 회수 업무 부적정

-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시 차주와 ‘주택 완공 후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분양대금은 대출금 상황에 사용한다’는 조건의 특약사항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대출기한 연장 시 동 대출은 대출심사위원회 승인 대출금으로서 ‘건물완공 후 주택을 임대·분양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채권보전 등의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1.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63조(담보가액 산출기준), 제259조(후취담보 취득시 유의사항), 제3편 제66조(기한연장), 제5편 제457조(특약사항), 제463조(채권보전)